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6선거구 김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께 지난 6월 9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투기성 거래 억제를 위해 시행되어 온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 따라 사업구역 기준 반경 1km에 해당

하는 직접영향권에 걸쳐있다는 이유로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법정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사업 구역과 관계없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동, 법정동 등 행정경계,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 도로·하천 등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고시’하도록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4개동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올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검토 및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